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911호
2. 발 의 자 : 김용연 의원
3. 발의일자 : 2020. 10. 15.
4. 회부일자 : 2020. 10. 21.

II. 제안이유

-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.

III. 주요내용

1.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1조제1항제7호).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초중등교육법」 및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
2. 예산 조치 : 별도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3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김용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11호로 발의되어 2020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내에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¹⁾ 따른 법정필수기구로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,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,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학교 부지내 대규모 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,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점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

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②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.
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절차로 사료됩니다.

- 특히 지난 2020년 9월 24일 제정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에서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의 협의에 앞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만큼 동 개정조례안이 이러한 다른 조례의 규정을 반영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.²⁾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017, 2020.11.10.)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) ①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1. 학교복합시설의 규모, 용도, 자원,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
2.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
3.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4.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
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

관계법령

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0. 10. 20.] [법률 제17496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

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.

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기능) ①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2.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4.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5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6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7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
8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
9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
10. 학교급식
11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12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
13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14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(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.

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